

도서관법 시행령

<목 차>

1. (도서관인력·시설·자료) 사서 배치기준 신설
2. (도서관인력·시설·자료)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 성 자	이름	곽수영
	담당부서 (과)	도서관정책기획단		직급	사무관
	국장	김용섭		연락처	044-203-2618
	과장	조선희		이메일	okdsmy98@korea.kr

2026. 2. 19.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김용섭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도서관 인력·시설·자료) 사서 배치기준									
	2.규제조문	도서관법 시행령안 제33조제1항(별표5)									
	3.위임법령	도서관법 제41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2.27.~2026.3.18.(예정)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도서관법」 일부개정안 시행('26.5.12.)으로 전문도서관 및 특수(병영)도서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기준이 요구되며, 법령에서도 해당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 품질 향상과 체계적인 도서관 운영 도모									
	7.규제내용	○ 전문도서관 및 특수(병영)도서관의 인력 기준을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이해관계자 : 전문도서관 및 특수(병영)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 관련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전문도서관 및 병영도서관</td><td>'24년 기준 전문도서관 495개관 병영도서관 1,686개관</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문도서관 및 병영도서관	'24년 기준 전문도서관 495개관 병영도서관 1,686개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문도서관 및 병영도서관	'24년 기준 전문도서관 495개관 병영도서관 1,686개관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전문도서관 및 특수(병영)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서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 용	편 의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도서관 운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 발생	도서관 서비스 품질 제고	없음						
		주요내용	○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 정예외 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 정세부 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 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 정					
		일몰유 형		일몰설 정기간		일몰주 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1.·2. (생 략) <u><신 설></u> <u><신 설></u>	[별표 5] 1.·2. (현행과 같음) <u>3. 전문도서관(공중을 대상으로 서비스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업무와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한 사서를 둘 것</u> <u>4. 병영도서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업 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서를 둘 것</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 「도서관법」 일부개정(2025. 11. 11.)됨에 따라, 법 제41조제4항에서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도서관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공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지식정보 기반시설임. 특히 전문도서관은 학술 및 연구 활동 등의 정보서비스 역할을 수행하고, 병영도서관은 장병의 독서활동 및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교육·문화 인프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이에 도서관의 본질적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が必要함
- 또한, 「도서관법」은 도서관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정리·보존과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법률이 지향하는 전문적인 자료 관리와 질 높은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운영 요건을 설정하고자 함

□ 정부개입 필요성

- 「도서관법」 제 41조(전문도서관·특수도서관의 설치 등)에 설립과 업무 및 역할 수행에 관한 규정만 존재하고,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 미비로, 도서관의 기능 수행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인 인력은 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집행수단에 해당함
-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은 이미 일정한 인력 배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전문도서관 및 병영도서관에는 기준이 없어 동일한 법체계 내에서 서비스 품질 등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최소한의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정부가 제시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사서배치 기준 규정
	내용	○ 도서관 운영 전문 인력 기준 명시 1. 전문도서관 · (인력)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문도서관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서를 둘 것 2. 특수(병영)도서관 · (인력)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특수도서관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서를 둘 것
규제대안2	대안명	별도의 전문 인력 기준 없이 자율적으로 도서관 운영
	내용	전문 및 특수도서관에 운영 전문 인력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고, 각 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법률 위임에 근거한 명확한 기준 설정으로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 시행령 제정을 통한 신설 규제로서 제도 도입에 따른 최소한의 행정적

	일관성 확보 ·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제고	조정 필요
규제대안2	· 기관의 자율성과 탄력적 운영 보장과 행정적 규제 최소화를 통한 규제 부담 완화	· 도서관 운영 요건 중 인력 기준 부재 시 도서관으로서의 기본 기능 수행에 어려움 우려 · 특히 전문 및 특수도서관과 같이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의 경우, 전문적 정보서비스 제공에 한계 등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장소·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한국 전문도서관 협의회	대면회의(세종) (‘25.9.30.,’26.1.7.) *수시(유선) 전문도서관협의회 주관 현황조사 (‘25.12.29.~’26.1.2.) 전문도서관 이사회 의견수렴 (‘26.2.5.)	-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필요, 관련 기관들과 논의를 통해 기준*제시 * (인력) 직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 최소 1명, 100명 이상인 경우 1+직원수-100/100 * 전문도서관 현황조사 결과<table><tr><td colspan="2">응답기관수 (92관)</td><td>규모 (직원)</td><td>평균 사서수</td></tr><tr><td>A</td><td>11</td><td>100미만</td><td>1.90</td></tr><tr><td>B</td><td>47</td><td>100~500</td><td>1.99</td></tr><tr><td>C</td><td>34</td><td>500초과</td><td>3</td></tr></table>※ 총147개관 중 92개관(63% 응답) - 문체부 개정안 대한 전문도서관 이사회 의견수렴 결과 수용 * 이사 15명 중 10명 참석	응답기관수 (92관)		규모 (직원)	평균 사서수	A	11	100미만	1.90	B	47	100~500	1.99	C	34	500초과	3	<인력 기준 협의 수정> - 도서관법 제4조 (도서관의 구분)제2항 제4호 따른 전문도서관은 ‘소속 직원, 공중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서를 두는 것으로 정함 * 전문도서관 현황(‘24년 기준)<table><tr><td>구분</td><td>1관당 평균</td></tr><tr><td>사서수</td><td>1.38명</td></tr></table>	구분	1관당 평균	사서수	1.38명
응답기관수 (92관)		규모 (직원)	평균 사서수																				
A	11	100미만	1.90																				
B	47	100~500	1.99																				
C	34	500초과	3																				
구분	1관당 평균																						
사서수	1.38명																						
국방부 정신전력정책과	‘25.11.13./ ‘26.1.20 담당자 의견수렴 (유선)	병영도서관 운영 인력 기준 미제시	<인력 기준 협의 수정> - 도서관 운영요건 중 인력 배치기준 필요 -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 제9조(사서배치 및 교육)제1항에 따른 인력기준을 준용하여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서를 두는 것으로 정함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도서관법」에서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 마련 필요
-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여 도서관을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기관의 행·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준으로 마련함

3. 규제목표

-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 기준 마련으로 도서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체계적인 도서관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 전문도서관의 경우 모든 전문도서관에 대한 일률적 적용이 아닌 공중에게 서비스 하는 경우로 한하여 적용하고자 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인력 기준 신설에 따른 도서관 이용자 대상 질적 서비스 제고
- 전문도서관 및 특수(병영)도서관은 각각 특정 분야의 전문정보 제공과 군 장병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독서문화 형성이라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 기반이 필요
- 현재는 운영 인력에 관한 기준 부재로 기관별 도서관 운영 수준의 편차가 발생하고, 이용자의 정보서비스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운영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전문적 정보서비스 제공, 기본적인

장서 관리 및 서비스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서비스의 최소한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목적에 해당함

- 또한, 본 시행령 개정은 도서관 운영 전반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부담을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운영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목적과 수단 간 비례성이 인정됨
- 특히 전문도서관은 이미 규정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배제하고,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것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전문도서관, 병영도서관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전문도서관 및 특수(병영)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일몰설정이
곤란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전문도서관 및 특수(병영)도서관의 운영 기준을 제시하는 취지이므로, 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전문도서관 및 특수(병영)도서관의 운영 기준을 제시하는 취지이므로, 해당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전문도서관 및 특수(병영)도서관의 운영 기준을 제시하는 취지이므로, 해당없음
사후 평가관리		전문도서관 및 특수(병영)도서관의 운영 기준을 제시하는 취지이므로, 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전문도서관 및 특수(병영)도서관의 운영 기준을 제시하는 취지이므로,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시행령 : 인력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사서 등) ① 대학의 장은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를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위한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5조(사서 등) 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 대학에 한정한다. 이하 제6조제2항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학칙으로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학칙으로 교육·훈련 시간을 정할 때에는 대학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학생 수, 장서 수 및 도서관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서 및 전문직원을 확보·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제5조제1항 관련)	
산출기준	최소 배치기준 인원

학생 수가 1천명 이상이고 장서 수가 5만권 이상인 경우	1. 전문대학: 사서 2명 이상 2. 전문대학 외의 대학: 사서 3명 이상
학생 수가 1천명 미만이거나 장서 수가 5만권 미만인 경우	1. 전문대학: 사서 1명 이상 2. 전문대학 외의 대학: 사서 2명 이상
비고 1. "학생 수"란 학부과정 재학생 수와 대학원과정 재학생 수를 합한 수를 말하고, "장서 수"란 해당 대학도서관에 등록된 도서관자료 중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및 전자자료(전자책에 한정한다)의 총수를 말한다. 2. "전문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전문직원의 배치기준은 학생 수 및 장서 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시행령 : 인력, 시설, 자료 기준에 관한 사항>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립 및 공립의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총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1. 학교의 재학생수
2. 학교도서관의 규모·자료수 등 운영현황
3. 학교도서관의 이용자수
- ③ 사서교사 등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자료의 수집, 정리, 이용 및 예산편성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3. 독서지도 및 학교도서관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안내
 4.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교사의 교수·학습지원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사서배치 기준 규정 >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사서배치 기준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전문도서관의 경우, 학술 및 연구 활동 등에 필요한 업무와 역할 수행을 위한 사서로 도서관 서비스의 전문성 측면에서 직무 전문성과의 부합 등 준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 인력 기준은 의무화되지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기관의 예산 상황이나 이용자 규모에 맞춰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해져 고용 부담에 따른 규제 거부감을 최소화하여 준수 가능성을 높임
- 특수(병영)도서관의 경우,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의 사항을 법적 근거를 가진 제도권 안으로 안착시키는 과정이므로 현장의 거부감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준수 가능성이 높고,
- 인력 기준은 의무화되지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부대별 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여 준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도서관 운영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장의 규제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도서관 운영 기준 마련으로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도서관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25.11.11. 공포)에 따라 관련 부처 및 협회들과 논의 등 의견수렴 진행('25.9.~'26.1월, 대면 2회 및 수시회의)
-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주관 전문도서관 대상 의견수렴 진행
 - 국공립 전문도서관 시설, 인력 및 자료현황 조사('25.12.29.~'26.1.2.)
 -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전문도서관 이사회 회의('26.2.5.)
-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마련('26.1월)

2. 향후 평가계획

- 도서관 운영기준 마련을 통해 관련 규정의 실효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

3. 규제 정비계획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시행령은 도서관법 제41조제4항에서 위임한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별도의 대안을 고려하기 어려우며, 규제의 적정성·실효성·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행령과 같이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력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됨
- 시설 및 자료 기준은 전문도서관은 현재 공공도서관 법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병영도서관은 관련 훈령의 기준을 준용하였음
- 또한 인력 기준은 자율에 맡김으로써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련하여 전문도서관 및 특수(병영)의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도서관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데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사서배치 기준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사서배치 기준 규정>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전문도서관, 병영도서관	
활동제목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운영 기준 마련	
비용항목	인력운영비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전문도서관 495개관, 병영도서관 1,686개관('24년 기준) - (인력) 사서 1명 기준 * 개정안은 인원수 제한하지 않음	
	구분	산식
	전문	1명×3,428만원×495개관=16,968백만원
	병영	1명×3,428만원×1,686개관=57,796백만원
		* 공무원 보수규정('26.1.2.) (9급 1호봉 기준)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및 국방부 통계 조사 결과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도서관 이용자
활동제목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운영 기준 마련
편익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도서관 운영 기준 마련으로 전문 인력을 통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전반적으로 도서관 서비스의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도서관 인력·시설·자료)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									
	2.규제조문	도서관법 시행령안 제33조제2항(별표6)									
	3.위임법령	도서관법 제41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2.27.~2026.3.18.(예정)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도서관법」 일부개정안 시행('26.5.12.)으로 전문도서관 및 특수(병영)도서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이 요구되며, 법령에서도 해당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 품질 향상과 체계적인 도서관 운영 도모									
	7.규제내용	○ 전문도서관 및 특수(병영)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을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이해관계자 : 전문도서관 및 특수(병영)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 관련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전문도서관 및 병영도서관</td><td>'24년 기준 전문도서관 495개관 병영도서관 1,686개관</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문도서관 및 병영도서관	'24년 기준 전문도서관 495개관 병영도서관 1,686개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문도서관 및 병영도서관	'24년 기준 전문도서관 495개관 병영도서관 1,686개관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전문도서관 및 특수(병영)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서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도서관 운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 발생	도서관 서비스 제고	없음						
		주요내용	○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자료를 비치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 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15.규제 정비 계 획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1. 시설 기준 가.·나. (생략) <u><신설></u> <u><신설></u> 2. 도서관자료 기준 가.~다. (생략) <u><신설></u> <u><신설></u>	[별표 6] 1. 시설 기준 가.·나. (현행과 같음) <u>다. 전문도서관(공중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u> <u>라. 병영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52.2제곱미터 이상일 것</u> 2. 도서관자료 기준 가.~다. (현행과 같음) <u>라. 전문도서관(공중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u> <u>마. 병영도서관: 1천5백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 「도서관법」 일부개정(2025. 11. 11.)됨에 따라, 법 제41조제4항에서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도서관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공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지식정보 기반시설임. 특히 전문도서관은 학술 및 연구 활동 등의 정보서비스 역할을 수행하고, 병영도서관은 장병의 독서활동 및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교육·문화 인프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도서관법」은 도서관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정리·보존과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법률이 지향하는 전문적인 자료와 질 높은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소한의 물적 운영 요건을 설정하고자 함

□ 정부개입 필요성

- 「도서관법」 제 41조(전문도서관·특수도서관의 설치 등)에 설립과 업무 및 역할 수행에 관한 규정만 존재하고,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 미비로, 도서관의 기능 수행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인 시설 및 자료 기준은 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집행수단에 해당함
-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은 이미 시설 및 자료 비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전문도서관 및 병영도서관에는 기준이 없어 동일한 법체계 내에서 서비스 품질 등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최소한의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정부가 제시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규정
	내용	○ 도서관 운영 시설 및 자료의 기준 명시 1. 전문도서관 · (시설) 330제곱미터 이상 · (장서) 1만점 이상 2. 특수(병영)도서관 · (시설) 52.2제곱미터 이상 · (장서) 1천5백점 이상
규제대안2	대안명	별도의 기준 없이 자율적으로 도서관 운영
	내용	전문 및 특수도서관에 시설 및 자료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고, 각 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법률 위임에 근거한 명확한 기준 설정으로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 확보 ·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제고	· 시행령 제정을 통한 신설 규제로서 제도 도입에 따른 최소한의 행정적 조정 필요
규제대안2	· 기관의 자율성과 탄력적 운영 보장과 행정적 규제 최소화를 통한 규제 부담 완화	· 도서관 운영 요건 중 시설 및 자료 기준 부재 시 도서관으로서의 기본 기능 수행에 어려움 우려 · 특히 전문 및 특수도서관과 같이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의 경우, 전문적 정보서비스 제공에 한계 등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장소·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한국 전문도서관 협의회	대면회의(세종) (‘25.9.30.,’26.1.7.) *수시(유선)	·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필요, 관련 기관 들과 논의를 통해 기준*제시 * (자료) 직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 1만점 이상, 100명이상 500명 이하인 경우 3만점 이상, 500명 이상인 경우 5만점 이상 * (시설) 최소 330m² 이상으로 하되 전체 직원 수와 자료 수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면적은 기관(단체)장이 정함	<기준 협의 수정> · 도서관법 제4조 (도서관의 구분)제2항 제4호 따른 전문도서관은 ‘소속 직원, 공중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시설 및 자료는 공중에게 서비스하는 공공도서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함 * 전문도서관 현황(24년 기준) <table><tr><td>구분</td><td>1관당 평균</td></tr><tr><td>자료수</td><td>40,718권</td></tr><tr><td>연면적</td><td>733m²</td></tr></table>	구분	1관당 평균	자료수	40,718권	연면적	733m ²																	
	구분	1관당 평균																								
자료수	40,718권																									
연면적	733m ²																									
	전문도서관 이사회 의견수렴 (‘26.2.5.)	<table><tr><th colspan="2">응답 기관수 (92관)</th><th rowspan="2">규모 (직원)</th><th colspan="2">평균 장서수</th></tr><tr><th>A</th><th>B</th><th>인쇄</th><th>온라인</th></tr><tr><td>11</td><td>47</td><td>100미만</td><td>36,060</td><td>964</td></tr><tr><td></td><td></td><td>100~500</td><td>49,002</td><td>13,842</td></tr><tr><td></td><td>34</td><td>500초과</td><td>74,079</td><td>110,509</td></tr></table> ※ 총147개관 중 92개관(63% 응답) · 문체부 개정안 대한 전문도서관 이사회 의견수렴 결과 수용 * 이사 15명 중 10명 참석	응답 기관수 (92관)		규모 (직원)	평균 장서수		A	B	인쇄	온라인	11	47	100미만	36,060	964			100~500	49,002	13,842		34	500초과	74,079	110,509
응답 기관수 (92관)		규모 (직원)	평균 장서수																							
A	B		인쇄	온라인																						
11	47	100미만	36,060	964																						
		100~500	49,002	13,842																						
	34	500초과	74,079	110,509																						

국방부 정신전력정책과	'25.11.13./ '26.1.20 담당자 의견수렴 (유선)	·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제5조 및 별표1*)에 따른 시설 및 자료 기준 적용을 요청함 <table> <tr> <th>부대편제 인원</th> <th>면적</th> <th>자료</th> </tr> <tr> <td>150명</td> <td>52.2㎡</td> <td>1,500권 이상</td> </tr> <tr> <td>300명</td> <td>57.6㎡</td> <td>3,000권 이상</td> </tr> <tr> <td>500명 이상</td> <td>77.2㎡</td> <td>5,000권 이상</td> </tr> </table>	부대편제 인원	면적	자료	150명	52.2㎡	1,500권 이상	300명	57.6㎡	3,000권 이상	500명 이상	77.2㎡	5,000권 이상	<기준 협의 수정> · 시설과 자료는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제5조 및 별표1*)의 최소 기준을 적용함
부대편제 인원	면적	자료													
150명	52.2㎡	1,500권 이상													
300명	57.6㎡	3,000권 이상													
500명 이상	77.2㎡	5,000권 이상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도서관법」에서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 마련 필요
-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시설 및 자료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여 도서관을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기관의 행·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준으로 마련함

3. 규제목표

-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 기준 마련으로 도서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체계적인 도서관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 전문도서관의 경우 모든 전문도서관에 대한 일률적 적용이 아닌 공중에게 서비스 하는 경우로 한하여 적용하고자 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시설 및 자료 기준 신설에 따른 도서관 이용자

대상 질적 서비스 제고

- 전문도서관 및 특수(병영)도서관은 각각 특정 분야의 전문정보 제공과 군 장병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독서문화 형성이라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 기반이 필요
- 현재는 시설 및 자료 등에 관한 기준 부재로 기관별 운영 수준의 편차가 발생하고, 이용자의 정보서비스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운영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전문적 정보서비스 제공, 기본적인 장서 관리 및 서비스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서비스의 최소한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목적에 해당함
- 또한, 본 시행령 개정은 도서관 운영 전반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부담을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운영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목적과 수단 간 비례성이 인정됨
- 특히 전문도서관은 이미 규정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배제하고,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것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전문도서관, 병영도서관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전문도서관 및 특수(병영)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일몰설정이 곤란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전문도서관 및 특수(병영)도서관의 운영 기준을 제시하는 취지이므로, 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전문도서관 및 특수(병영)도서관의 운영 기준을 제시하는 취지이므로, 해당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전문도서관 및 특수(병영)도서관의 운영 기준을 제시하는 취지이므로, 해당없음
사후 평가관리		전문도서관 및 특수(병영)도서관의 운영 기준을 제시하는 취지이므로, 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전문도서관 및 특수(병영)도서관의 운영 기준을 제시하는 취지이므로,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시행령 : 시설 및 자료 기준에 관한 사항>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2조(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대학의 특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대학도서관의 연면적이 재학생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시설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도서관자료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학생 수, 도서관 이용 현황 및 도서관자료 증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도서관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별표 2]

도서관자료 기준(제6조제2항 관련)		
대학 구분 \ 도서관자료	최소 기본도서 수	최소 연간 증가 책 수

전문대학	학생 1명당 30권 이상	학생 1명당 1권 이상
전문대학 외의 대학	학생 1명당 70권 이상	학생 1명당 2권 이상

비고

1. "도서자료"란 도서관자료 중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연속간행물을 제외한 인쇄자료
나. 연속간행물을 제외한 필사자료
다. 전자자료 중 전자책
2. "기본도서 수"란 해당 대학도서관에 등록된 도서자료의 총수를 말한다.
3. "연간 증가 책 수"란 해당 연도에 새로 등록된 도서자료(해당 대학이 구입한 도서자료에 한정한다)의 수를 말한다.
4. "전문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도서자료 외의 도서관자료 기준은 학생 수 및 도서관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시행령 : 시설 및 자료 기준에 관한 사항>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시설·자료 등) ① 학교도서관은 해당 학교의 특성과 사용자 요구에 적합한 시설·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 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 시설·자료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폐기·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시설·자료의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자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3. 각각의 학교는 1,000종 이상의 자료를 갖추어야 하고, 연간 100종 이상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자료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제적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된 자료로서 보존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훼손 또는 파손·오손된 자료로서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유실된 자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규정 >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준용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전문도서관의 경우,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기존 공공도서관 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추므로써 준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특수(병영)도서관의 경우, 병영도서관 운영 훈령의 사항을 법적 근거를 가진 제도권 안으로 안착시키는 과정이므로 현장의 거부감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도서관 운영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장의 규제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도서관 운영 기준 마련으로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도서관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25.11.11. 공포)에 따라 관련 부처 및 협회들과 논의 등 의견수렴 진행('25.9.~'26.1월, 대면 2회 및 수시회의)
-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주관 전문도서관 대상 의견수렴 진행
 - 국공립 전문도서관 시설, 인력 및 자료현황 조사('25.12.29.~'26.1.2.)
 -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전문도서관 이사회 회의('26.2.5.)
-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마련('26.1월)

2. 향후 평가계획

- 도서관 운영기준 마련을 통해 관련 규정의 실효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

3. 규제 정비계획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시행령은 도서관법 제41조제4항에서 위임한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별도의 대안을 고려하기 어려우며, 규제의 적정성·실효성·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행령과 같이 도서관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자료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됨
- 시설 및 자료 기준은 전문도서관은 현재 공공도서관 법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병영도서관은 관련 훈령의 최소 기준을 적용 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도서관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데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5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및 자료를 비치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규정>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전문도서관, 병영도서관					
활동제목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운영 기준 마련					
비용항목	자료구입비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o 전문도서관 3.2개관, 병영도서관 16.2개관(최근 5년간 신규 개관 도서관 평균수 기준)					
	- (자료) 전문도서관 1만점, 병영도서관 1천5백점 기준					
	구분	산식			근거	
	전문	1만점×19,526원×3.2개관=624백만원			* 2024 한국출판생산통계 (도서 1권당 19,526원)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및 국방부 통계 조사 결과	
	병영	1천5백점×19,526원×16.2개관=474백만원				
	* 최근 5년간('20.~'24.) 신규 개관 도서관 평균수					
	구 분	'20	'21	'22	'23	'24
신규 전문도서관 수	4	5	4	2	1	3.2
신규 병영도서관 수	37	22	21	1	0	16.2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도서관 이용자
활동제목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운영 기준 마련
편익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o 도서관 운영기준 마련으로 적절한 시설과 자료 등의 기준 마련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 확보 등 전반적으로 도서관 서비스의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